



서대문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홍은제6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지정고시(경미한 변경)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32호(2009. 6.11.)로 정비구역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2012-호(2012. 1.19.)로 정비구역변경지정, 서대문구고시 2013-12호(2013. 2. 8.)로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00호(2014. 8. 28.)로 정비구역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된 홍은동 13-25 일대 홍은제6주택재건축구역정비사업에 대하여

2.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신청(안)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, 소형평형 확대에 따른 건축시설계획 변경사항으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,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서대문구 구보에 게재 고시코자 합니다.

가. 정비구역의 명칭 : 홍은제6주택재건축 정비사업

나. 위 치 : 서대문구 홍은동 13-25 일대

다. 면 적 : 13,078㎡

라. 변 경 사 유 : 소형평형 확대에 따른 건립세대수 변경 등

마. 고 시 방 법 : 구보게재, 홈페이지 고시·공고란 게재

붙임 1. 검토보고서 1부.

2. 고시문(안) 1부. 끝.

주무관

진승언

재건축팀장

김연석

주택과장

송광덕

환경도시국장

03/12
오제성

협조자

주무관

김오녀

규제개혁팀장

김정현

시행 주택과-6988

() 접수

()

우 120-703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구청 4층 주택과 / <http://www.sdm.go.kr>

전화 02-330-1933 /전송 02-330-1634 / jse2833@sdm.go.kr / 대시민공개